

합의서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 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이하 “IPS”라고 함)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번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더셀주식회사(이하 “더셀”라고 함)는 2016년 10월 [20]일 (“효력발생일”)부로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체결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전문 -

1. IPS 와 더셀은 2014년 12월 3일 IPS 장비에 부속되는 New Backbone 에 관한 공동개발계약서(이하 “공동개발계약서”라 칭함)를 체결하였고, 그 결과 New BB Max. 3.0 버전(이하 “New BB Max. 3.0”이라 칭함)을 개발 완료하여 양산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
2. 전술한 “공동개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IPS 는 New BB Max. 3.0 에 관한 컨셉(Concept) 및 아이디어의 제공, 개발 과정에서의 사양(Specification) 조율 및 협의 진행, Demo 평가 등을 담당하였고, 더셀은 IPS 로부터 제공된 컨셉 및 아이디어를 통해 개발의 속도 및 사양 협의, 개발 과정의 보고, 제조를 담당하였다.
3. 양 당사자는 공동개발계약서에 따른 IPS 의 기여도를 고려하고, 안정적인 공급의 목적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New BB Max. 3.0 의 제조를 이원화하고자 상호 간에 협의를 진행하였고, 더셀은 IPS 의 New BB Max. 3.0 이원화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기로 하였다.
4. 이에 IPS 와 더셀은 양 당사자 간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합의서의 체결에 상호 동의하고, 더셀은 New BB Max. 3.0 개발에 있어 IPS 의 기여와 안정적인 제품 공급의 목적을 고려하여 IPS 가 본 합의서에 근거하여 더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제 3 자(이원화 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본 합의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체결하고자 한다.

- 다음 -

제 1 조 목적

본 합의서는 IPS 장비에 부속되는 Backbone 설비의 제작 이원화 및 상호 간의 기술 교류를 통한 Backbone 설비의 제작기술 향상(이하 “목적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당해 “비밀정보”를 특정한 이원화 업체(이하 “이원화 업체”)에게만 공개하는 것(이하 “목적 사업”을 포함하여 “목적 범위”라 칭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양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가 제공하는 영업비밀, 노하우, 그리고 기타 비밀정보 등이 “공동개발계약서”에 의하여 공동 및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창출한 것이며, 독자적인 개발로 발생한 “비밀정보”에 관하여는 배타적인 권리자임을 인정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본 합의서에 따라 적법하게 수령한 “비밀정보”를 본 합의서 제 1 조의 “목적 범위” 및 허용된 범위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단, IPS 가 “이원화 업체”에게 공개할 수 있는 더셀의 “비밀정보”는 설계, 도면, 제조 SOP(Scope of Performance), 기구(3D/2D/BOM), 제어(2D/BOM) 등을 모두 포함하되, 그 구체적인 “비밀정보”의 대상을 별첨 1.의 정보제공동의서의 규정된 범위로 한정 한다.

제 3 조 비밀정보

- ① 본 합의서에서의 “비밀정보”라 함은 본 합의서의 체결 사실, “공동개발계약서”的 수행 과정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그리고 본 “목적 범위”내 사용을 위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 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단, 본 합의서의 “비밀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각 당사자가 비밀로써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한한다.
- ② “정보제공자”(“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정보수령자”(“비밀정보”를 제공 받는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대외비” 등 이외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15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각 당사자는 본 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만을 “비밀정보”로 인정하며,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밀정보”임을 표기, 표식 또는 요약서의 형태로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를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 4 조 합의서 기간 및 비밀유지의무

- ① 본 합의서는 그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하 “합의서 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며, 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본 합의서의 해지에 관한 상호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합의서의 비밀유지의무는 “합의서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합의서가 종료된 이후에도 (3)년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합의서가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 5 조 비밀유지의무

- ① “정보제공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나 본 합의서 제1조에서 특별히 예정하고 있는 제3자를 제외하고,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관련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은 본 합의서와 관련한 어떠한 “비밀정보”도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 합의서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관계회사는 지배하는 회사, 지배당하는 회사, 또는 당사자의 공동지배 하에 있는 회사를 포함하며, 그 관계회사의 “관련 임직원”들을 포함한다.
- ③ 더셀은 IPS가 본 합의에 따른 “목적 범위”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원화 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IPS는 “목적 사업” 및 “목적 범위”를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정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 ① “정보수령자”는 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합의서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범위”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필요로 하고,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고지 받았으며, “목적 범위” 내에서만 “비밀정보”를 사용할 관계회사 및 그들 각각의 “관련 임직원”들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그의 관계회사들 및 “관련 임직원”들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제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 및 관련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 수준 및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 ⑤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的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었던 정보
2. “정보수령자”的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무의 부담을 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6. “정보수령자”가 본 합의서에서 그 공개가 허용된 제3자에게 공개한 정보

제 8 조 자격부여

본 합의서의 체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된 “비밀정보”를 “목적 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나 자격을 수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모든 “비밀정보”는 공개 당사자의 소유이다.

제 9 조 정보의 반환

- ① “정보수령자”는 본 합의서의 해지·해제 또는 “정보제공자”的 요청에 의하여, “정보제공자”的 “비밀정보”를 포함하거나 언급하고 있는 서류나 유형물(이는 그러한 자료들의 복사물이나

재생산물 포함)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② “정보수령자”, 관계회사, 또는 “관련 임직원”들은 “비밀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폐기하여야 하고, 폐기 후에는 그때부터 10 일 이내에 폐기절차 및 폐기 자료 목록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험 자재와 샘플

- ①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모든 시험도구와 샘플은 “정보제공자”的 소유이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재와 샘플을 이용하여 시험과 실험을 할 수 있다.
-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的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시험 자재와 샘플을 제 3 자가 시험하거나 분석하게 할 수 없다. 모든 시험과 행위의 결과는 “정보제공자”的 소유이고, 본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비밀정보”가 된다.

제 11 조 법에 의한 공개

- ① “정보수령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한 공개 요구 등),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的 척결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그러한 요구 상황 등의 발생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만약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的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호조치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가 본 합의서 조항의 준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정보수령자”는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법령에 따라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的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들의 관계

본 합의서의 체결로 인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작이나 조합관계, 위임 관계 등이 설정된 것도 아니고, 본 합의서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 사이에 명백한 합의가 실행되고 이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자도 본 합의서, 또는 그들 각각의 관계회사 또는 “대표자”들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표시에 의해서 “목적 범위” 내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종류의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 13 조 보증

-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14 조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본 합의서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합의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15 조 독립성

본 합의서 하에서 어떠한 조항의 포기나 합의서 위반, 의무불이행은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ONFIDENTIAL

제 16 조 구속력

- ① 본 합의서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합의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的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본 합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③ 본 합의서의 모든 규정은 각 당사자 외 그 양수인, 승계인에게도 구속력을 가진다.

제 17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귀속

- ①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합의서가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8 조 합의서 해지 및 손해배상의무

- ① 당사자 일방이 본 합의서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합의서를 해지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도 합의서의 해지 이전에 공개된 본 합의서 상의 "비밀정보"와 관련한 "정보수령자"의 의무는 합의서 해지의 효과 발생 이후 3년간 유지된다.
- ③ 본 합의서를 위반한 당사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각 당사자는 본 합의서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 19 조 효력발생

본 합의서는 2부가 작성되며, 서두에 기재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또한 본 합의서는 당사자의 서명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합의서와 관련한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한다.

제 21 조 특약사항

- ① 각 당사자는 본 합의서의 "목적 사업" 및 "목적 범위" 내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신의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영업비밀"의 공개를 강요 받거나 요청 받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정보 공개의 범위는 오직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
- ② 각 당사자는 본 합의서의 "목적 범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기술 개발 및 Backbone 설비에

CONFIDENTIAL

관한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설비의 공급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본 합의서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합의서의 체결 사실, 내용, 상호 간의 정보 공유 및 특정된 제 3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분쟁, 다툼을 야기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지 아니 한다.

- ③ 양 당사자는 본 합의서 체결 이전에 체결된 “공동개발계약서(2014년 12월 3일 체결)”, “비밀유지계약서(2014년 12월 3일 체결)” 및 “비밀유지계약서(2015년 9월 16일)” 중 그 효력이 유효한 계약서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가 본 합의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본 합의서의 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④ 본 합의서는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위하여 상호 간에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본 합의서가 각 당사자에 대한 판매 또는 구매를 보증하거나 매출의 증대를 확약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전술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에 그 증거로, 당사자들은 전문에 기재된 합의서 발효일자에 본 합의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0. 20.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더셀 주식회사

직위: 대표 이사

직위: 대표 이사

성명: 박경우



성명: 하태성



별첨 1. 정보제공동의서

정보제공동의서			
IPS는 상기 합의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더셀은 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 정보			
신청자		부서	
전화번호		요청일자	2016년 월 일
◎ 업체 정보			
업체명	더셀 주식회사	담당자	
◎ 자료의 사용목적			
1. IPS 장비에 부속되는 New Backbone Max. 3.0 설비의 제작 이원화를 위한 정보 공유 2. 지속적인 BB 개발을 통한 상호 간 기술개발의 역량 강화 3. 고객사의 needs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인 설비의 공급 목적			
◎ 제출자료			
위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관련 자료			
1. Max. 3.0 과 관련한 도면, BOM (기구, 제어), 특히 정보, 제조 SOP, 검수시방서, 8 계통 MAP 2. 설비 조립 작업 표준서, 출하 검사 기준서/성적서 3. 설비 제작 관련 자료 Torque Map, Gauge Spec Label Map, Gauge Setup Parameter, Cable Dressing Map 4. 8 계통 점검 Check Sheet, Safety Label Map, Gauge Label Map, Name Tag 사양 및 부착 위치 자료 ※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상호 협의 하에 취할 수 있습니다. ※ 위 자료를 제외한 비밀정보의 경우에는 IPS에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인도일 및 인도방법			
1. 인도일 : 관련 자료의 필요 요청에 따른 납기일 2. 인도 방법 : 서면, 파일, 동영상, CAD 파일 등 전자적 전송 방법 및 오프라인(off-line) 송부			
◎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1. 제출자료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은 원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 2. 위 제출자료는 New Backbone 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자료로서 양사 간의 경쟁력 향상 및 공동의 기술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위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는 New Backbone 의 제조에 따른 위탁비용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3. IPS는 더셀이 제출한 자료를 상기 합의서에 규정한 “목적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료사용에 관한 합의서(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겠습니다. 4. 더셀은 상기 합의서에 규정한 제3자에게 본 자료가 공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 비밀유지			
IPS는 더셀이 제공한 자료 중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만을 비밀로 유지하고 합의서에서 규정한 “이원화 업체”를 제외한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2)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 3)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 4) 더셀이 ‘비밀’, ‘대외비’ 등의 표시를 통해 해당 자료가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자료임을 명확히 밝힐 것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번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더셀 주식회사와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 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는 본 정보제공동의서를 상기 합의서에 기하여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형평에 기하여 상호 협의하고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0월 20 일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더셀 주식회사

직위: 대표 이사

직위: 대표 이사

성명: 박정우

성명: 하태성

CONFIDENTIAL